

## 경찰화재 감식의 목적과 한계

경기지방경찰청 문용수

### 1. 개요

지난 1997년 IMF위기 이후 화재사건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안정 추세에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화된 선진국형 화재 사건인 지능형 방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며, 도시화에 따른 인구 집중으로, 단일 화재 사건에 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동안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로 억제되어 있던 화재 민사 부분이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 활성화되어 화재사건 피해자가 요구하는 민원 서비스 또한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경찰 화재감식은 변화되는 국내 환경에 대처할 수 없었으며, 대응 감응 속도 또한 매우 느려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대한 한계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거는 현 시점의 경찰화재감식의 한계를 바로 알고 현재까지 행하고 있는 경찰 화재감식의 목적과 한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대응 방

안을 모색코자 한다.

### 2. 경찰 화재감식 실태 및 가상 사례 소개

현재 국내 화재사고 발생 건수는 소방방재청 통계 연간 약 3만 건으로 추산되나, 전국 경찰화재 감식 전문 요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문화 교육 이수자)은 80여명에 지나지 않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감정 관련 연구원은 전국에 15명인 것에 비추어 사건화된 화재에 대한 감식·감정 인력은 턱없이 모자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화재사건 관련 감식·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업무 과중의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라는 의문점이 도출된다.

우선 그 문제점으로 과중한 업무의 부담인 의

퇴 건수의 폭주로, 경찰 화재 감식의 대상 중 범죄혐의(방화, 실화 등)가 있는 사건은 전체 조사 건수의 20% 미만이고, 나머지 80%에 달하는 사건이 범죄혐의 없는 제조물 관련 또는 이재 관계의 민사 소송 사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범죄혐의가 없는 단순 민사 피해 사건의 경우 대 부분 경찰서 자체 종결 처리되고 있으며, 그 종결 대상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제조물 책임 화재사건이다.

제조물 관련 결함에 의한 화재사건의 경우 대부분 범죄 개연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피해자의 요구와 민원 발생을 대비해서 감정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 감정 의뢰되어 그 감정결과를 근거로 사건을 종결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제조물 결함 관련 화재사건이 지난 2002년 7월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의식과 민사 소송 환경이 변화되고 있어 그 변화된 환경에 대처할 수 없는 경찰 화재 감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에 대한 가상적인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찾기로 한다.

## (가상 화재사건 소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2003년 ○월 ○일 15시경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피해자가 텔레비전 뒤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분전반내 메인 차단기를 끄고 거실 쪽으로 돌아보니 텔레비전에 이미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가져다가 진화를 하였으며, 그 당시 옆집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집안까지 들어와

목격하였다.

피해 정도는 텔레비전과 옆에 있던 비디오가 완전히 전소되었고, 텔레비전 주변의 벽지 및 천장 일부가 탄화 소실 상태로, 거실 일부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피해자는 분명히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화재를 목격하였고,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으므로, 피해자는 텔레비전 제조사로부터 모든 피해를 배상 받을 것을 확신, 제조사에 피해 배상을 요구한바, 텔레비전의 제조사는 다른 회사 제품인 옆에 있던 비디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다시 비디오 제조사에 연락을 하여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비디오 제조사측 역시 텔레비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피해자는 양 쪽 제조사로부터 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내용에 격분하여 경찰 112에 화재신고를 하였다.

경찰 기관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하고 출동하여 현장감식이 이루어 졌으며, 화재감식 전문 요원이 조사하여 현장을 관찰, 빌굴, 복원 과정에 방화 실화등 기타 범죄 개연성이 없었으나, 발화부가 텔레비전과 비디오 부분으로 조사되어 텔레비전과 비디오 잔해를 증거물로 수거했다.

수거한 증거물인 텔레비전과 비디오의 잔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 되었고, 약 20일 후 감정서 회보를 받는다.

감정결과는 “텔레비전과 비디오 잔해의 소실이 심하여 발화원인에 대한 논단이 불가능함”이라는 감정결과로 사건 담당자는 수개월 후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서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가 원인 미상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연락을 받는다.

피해자는 결국 제조사로부터 합의에 의한 배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민사 소송의 증거 확보를 위해 경찰서에 감정물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사건 담당자는 반환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15일 이내 반환요구를 하지 않아 감정물은 이미 폐기처분되었기 때문이다.

### 3. 가상 사례에 대한 의문점

가상 사례에 대한 경찰 화재감식의 의문점 도출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재감식 요원이 현장감식 결과 범죄 협의가 없는 현장인 것이 확인되었으나, 경찰 화재감식에서 제조물책임법 관련 민사 이재 관계의 증거물인 텔레비전과 비디오 잔해를 수거해서 소송에 필요한 자료까지 원인을 밝혀야 하는가?

둘째, 범죄 협의점은 없지만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해서 경찰 화재감식 요원이 민사 소송 증거 자료인 감정물을 수거한다면 감정물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감정물 반환여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거물 수거가 가능한 것인가?

### 4.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 제시

우선 대응 방안 모색에 앞서 경찰화재감식은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조~제176조)에 관한 수사와 관련되어 파생되는 제반 수

사행위의 포괄성에 입한다 하여 경찰 화재감식의 목적과 한계를 정리하기로 한다.

#### 경찰 화재감식의 목적

경찰 화재감식의 목적은 범죄현장 감식의 목적과 같은 범증 혐의 포착이며, 범증에 대한 보존, 입증조치, 공소 유지에 목적이 있다

#### 경찰 화재감식의 한계

화재현장의 목적 내에서 감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범죄가 없는 현장은 화재감식 대상이 아니다.

가상 사례의 첫 번째 문제점인 범죄 현장이 아닌 사건에 대한 증거물 수거는 제조물 관련 이재 관계이므로 경찰 화재감식의 대상이 아니므로 한계를 넘어선 업무 행위로서 판단할 수 있으며, 가상 현장에서와 같이 오히려 피해자의 민사 진행 과정에 추가적인 감정이 필요한 증거 물에 대한 증거 확보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내부적으로는 경찰 및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감식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로, 한정된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인원에 대한 업무 폭주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현재 경찰 화재감식 전문 요원이 국내 80명으로 총 발생 3만 건의 화재 중 순수 범죄 혐의가 포착되는 사건은 약 20% 정도로 가정하면 연간 약 6,000여건의 화재 사건만이 실질적인 전문요원의 화재조사 대상이 되므로, 경찰 1인당 년 75 건의 화재 사건을 조사할 것이며, 75건에 대한 범죄 의심이 있는 화재사건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감정 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한

전국의 화재감정인 15명이 현재 연간 2200건을 감정하던 것을 범죄 혐의가 있는 화재사건의 감정물만 의뢰된다면 연간 감정의뢰 건수가 400 건 이하로 이루어질 것이며, 연구원 개인당 연간 30여건 정도의 감정 업무를 담당케 되므로, 현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예산 및 인원 증감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상 화재현장의 두 번째 의문점인 범죄 혐의 점이 없는 증거물의 수거시 피해자의 의사 및 반환여부와 관계없이 수거된다면 가상 사례와 같은 피해자가 민사 소송 당사자로서 증거물을 보존 및 입증해야하는 권리를 국가의 화재조사에 관한 공적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로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경찰 화재감식의 목적과 한계를 넘어선 민사 증거물 수거는 앞으로 피해자의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만약 수거해야만 한다면 피해자의 의사와 반환 여부 등에 대한 경찰 내부적인 안전 규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5. 결론

현재까지 기술한 경찰 화재 감식에 관한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없는 민사 사건만이 존재한다면 감정물 수거는 경찰 화재 감식의 목적과 한계를 넘어선 행위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클 것이며, 그에 따른 경찰 내부적인 업무 과중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경찰 화재감식의 목적과 한계 내에서 감식이 이루어져 향후 문제점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민사 소송 관련 피해자에 대한 권리의 보호와 경찰 화재감식 부문의 업무 과중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